

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10.10.27>

보상금의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비율의 산정(제12조관련)

1. 신분별 지급기준금액

특수임무수행당시의 신분	지 급 액
민간인·병·부사관 및 군무원	189만원의 범위안에서 복무형태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
장 교	35만원의 범위안에서 복무형태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

2. 등급별 지급비율

보상금의 등급별 지급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. 이 경우 총점은 가목에서 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에 따라 산정한 점수와 나목에서 특수임무종결형태에 따라 부여한 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.

등 급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10급
총 점	10점	9점	8점	7점	6점	5점	4점	3점	2점	1점
지급비율(%)	100	90	80	70	60	50	40	30	20	10

가. 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별 점수

근무시기		1953.7.27. 이전	1953.7.28. 이후
임무의 종류	특 수 임 무 수 행	3~4점	4~6점
	특수임무수행지원	1~2점	1~3점
교 육 훈 련		2~4점	3~6점

비 고 : 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의 구분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나. 특수임무종결형태별 가중치

특수임무종결형태	계약만료	해 고	전 역	사 망	행방불명
가 중 치	4점	1~3점	4점	4점	4점
특수임무종결형태	부 상	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			
가 중 치	1~4점	-3점 ~ 3점			

비 고

특수임무종결형태별 가중치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